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2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5.
3. 회부연월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평의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며,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대학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5. (생략)	제2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 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 는 사항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설></u>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 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학교육기관의 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현행	개정안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u><신 설></u>	④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u><신 설></u>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 1. 정기회: 학기당 1회 2.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u><신 설></u>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u><신 설></u>	⑦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

현행	개정안
<u><신 설></u>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u><신 설></u>	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⑩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 설></u>	⑪ 회의는 원격영상회의(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u><신 설></u>	⑫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

현행	개정안
<신 설> ② <u>대학평의원회의</u>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u>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⑬ <u>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⑭ <u>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u>----- ----- ----- -----.

1.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제6호 신설)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5. (생략)	제2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u>
<u>6. (생략)</u>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현재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개정안과 같이 대학평의회 심의사항에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할 경우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안도 심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의원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¹⁾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원들의 평의회도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²⁾하고 있음.

-
- 1)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평의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교육부는 소수 평의원에 의한 왜곡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학의 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

사학법인연합회는 동 사안은 정관이나 규칙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는 대학평의원회의 자치적 활동이 소수 평의원에 의해 왜곡되거나 갈등이 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임.

고려대학교는 이미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별도 심의요구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나, 1/2이상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2.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조정(안 제19조의2제2항)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구성 기준을 조정하고 있음.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학교육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령은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³⁾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평의위원회는 절반의 평의원을 교수로 구성하여 다른 구성단위에 교수들이 대학평의위원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3분의 1로 조정하여 교수 외 다른 구성단위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평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대학평의원 구성 제한 조항(1/2 초과 금지)에 대한 위헌심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청구 판결이 최근에 결정(각하 또는 기각, '23.10, 현재)됨으로 인해 교원의 대표성 위축 우려로 대학에서는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바, 의견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성균관대, 단국대, 홍익대는 하나의 구성단위가 의사결정을 전횡하는 상황방지는 1/2초과 불허로 충분하고, 책무성이 높아야 하는 교원의 대표성이 과소하게 위축될 가능성 있으며 교원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학생 평의원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 및 평의원 임기 조정(안 제 19조의2제3항, 제4항)

개정안은 다른 평의원과 달리 학생 평의원에 적용되던 의장 선임 제한, 임기 제한 등을 삭제하고, 모든 평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u>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 ----- ----- ----- . <u><후단 삭제></u>
④ 평의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한다. <u>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	④ ----- <u>1년으로</u> --- -- . <u><단서 삭제></u>

현행 법령상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나, 학생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학생이 아닌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나,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운영⁴⁾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생인 평의원과 학생이 아닌 평의원과의 상이한 규제를 통일할 경우 보다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평의원회의 중요성, 대학 중요정책의 연속성 및 평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고려했을 때, 평의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화여대, 건양대, 성균관대, 서울예술대는 평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대학 중요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평의원의 연속성 결여를 야기하여 심의·자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4.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 규정(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11항)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u> <u>1. 정기회: 학기당 1회</u> <u>2.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u> <u>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 <u>⑦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u>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u>

현행	개정안
<신 설>	는 미리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⑩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⑪ 회의는 원격영상회의(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신 설>	⑫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⑬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현행	개정안
② <u>대학평의위원회의</u>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u>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⑭ <u>그 밖에 대학평의위원회의</u>----- ----- ----- -----.

현재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정관이나 학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각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고려대학교는 현재 대학평의위원회는 안전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개최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항 신설이 불요하다는 입장임.

5. 관계기관 의견

법제처는 개정안에 따라 평의원 구성 비율 변경, 평의원 임기 단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평의원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개정안(공포 후 6개월)보다 더 유예하거나, 적절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자료 : 사립대 대학평의위원회 관련 통계

- 사립대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15~'17년, 171교)

연도	구성 단위	교원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기여자	기타	의원수 (평균)	회의 개최
2017	평균 인원	4.5	2.6	1.5	1.2	0.1	1.3	0.2	11.4명	5.3회
	비율	40%	23%	13%	11%	0%	11%	2%		
2016	평균 인원	4.5	2.6	1.5	1.2	0.1	1.3	0.2	11.4명	5.6회
	비율	40%	23%	13%	11%	0%	11%	2%		
2015	평균 인원	4.5	2.6	1.5	1.2	0.1	1.3	0.2	11.4명	5.1회
	비율	40%	23%	13%	11%	0%	11%	2%		

※ 교원 대평의원 구성 비율 구간 : 18% ~ 45% / 구성 평의원수 평균 : 11.4명(구간 11명~19명)

- 서울 소재 사립대학(30교)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비율

(2024. 6. 1. 기준, 정을호 의원실 요구자료 발췌)

대학명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및 기타
감리교신학대학교	38%	15%	0%	15%	31%
강서대학교	13%	38%	13%	13%	25%
건국대학교	42%	17%	8%	17%	17%
경희대학교	35%	25%	5%	15%	20%
광운대학교	42%	17%	8%	17%	17%
국민대학교	36%	18%	0%	18%	27%
덕성여자대학교	42%	17%	8%	17%	17%
동국대학교	31%	15%	15%	15%	23%
동덕여자대학교	36%	18%	9%	18%	18%
상명대학교	33%	25%	8%	17%	17%
서경대학교	42%	33%	0%	17%	8%
서울기독대학교	36%	27%	0%	9%	27%
서울여자대학교	36%	14%	7%	14%	29%
서울한영대학교	27%	27%	0%	9%	36%
성공회대학교	44%	25%	0%	19%	13%
성균관대학교	42%	17%	8%	17%	17%
성신여자대학교	33%	17%	0%	17%	33%
세종대학교	38%	15%	8%	15%	23%
숙명여자대학교	33%	17%	0%	17%	33%
송실대학교	38%	23%	8%	15%	15%
연세대학교	32%	16%	5%	11%	37%
이화여자대학교	33%	17%	0%	17%	33%
중앙대학교	47%	20%	0%	20%	13%
총신대학교	25%	17%	8%	25%	25%
추계예술대학교	42%	17%	8%	17%	17%
한국외국어대학교	45%	18%	0%	18%	18%
한성대학교	36%	21%	7%	21%	14%
한양대학교	40%	20%	7%	20%	13%
홍익대학교	36%	29%	21%	14%	0%
한국성서대학교	27%	27%	9%	18%	18%
합계	36%	21%	6%	17%	21%